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 공유 사상과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 꽤 오래된 아이디어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임에도 특정한 역사 시기에 부상했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이중의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불가능성과 지향성의 유토피아.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역사적 위기, 즉 사회의 기존 작동 방식이 의문에 부쳐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홀연히 나타났고, 다른 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될 때 다시 주변화되어 지층에 묻혔다.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이런 역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오늘날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새롭고 넓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사한 역사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현실의 제도이자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불가능성의 이유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는 근대 사회를 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 소유,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것인데, 이때 중심축이 되는 것이 공유이다. 공유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조건이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을 매개로 해서 소유의 조건으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소유를 가능케 한 조건인 노동 자체를 소유의 대립물로 전화시켰고, 이후 사회의 주된 대립과 갈등의 선은 노동과 소유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공유는 먼 과거의 이야기로 후퇴했다.

오늘날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통한 생존 조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유가 당대의 이야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와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늘의 정치이자 내일의 윤리가 된다.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고 하는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사상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이중 혁명’이라는 용어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동을 종합적으로 포착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¹⁾ 실제로 이중 혁명의 하나인 프랑스 혁명은 이를 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는데, 정치적, 법률적 혁명으로 시작한 프랑스 혁명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다양한 해법이 분출했다고 할 수 있다.²⁾ 이는,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민중의 투입(irruption)으로 인한 혁명의 탈선으로 보건, 정통주의적 관점에서 민중혁명으로 인한 혁명의 급진화로 보건 상관없이, 혁명으

1) 경제적 변동인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나고, 정치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실은 사실 맑스주의자들에게는 약간 곤혹스러운 사태였다. 이에 대한 좌파의 대표적인 논평은 다음을 보라. 페리 앤더슨, 『현대 사상의 스펙트럼』 (도서출판 길, 2011), 438-439쪽.

2) 여기에 대해서는 프랑스 혁명의 의미를 ‘권리의 평등’이라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인 길, ‘향유의 평등’이라는 자코뱅-사회민주주의적 길, ‘향유의 평등’을 위한 ‘재산과 노동의 공동체’라는 바뵈프의 공산주의적 길 등이 중첩되면서 현대 정치의 방향을 보여준 것에 있다는 알베르 소불의 해석을 참조하라. 알베르 소불, 『현대사에서의 프랑스 혁명』, 민석홍 (편), 『프랑스혁명사론』 (까치, 1988), 86-124쪽.

로 인한 (정치적) 공간의 개방과 확대 속에서 대중의 요구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의 총재 정부 시기에 등장한 바뵈프의 ‘평등주의자의 음모’는 빈곤과 분배의 문제를 소유와 연결시키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공산주의의 도래를 알렸다.³⁾

공화주의자로서 세 나라의 혁명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사회경제적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토머스 페인이 소유에 관한 논구이자 빈곤 퇴치의 해법으로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를 쓴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이다.⁴⁾ 페인은 『인간의 권리』 제2부(1792)의 뒷부분에서 이미 빈곤 퇴치를 위한 아동수당과 노령연금을 제안하였고,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계획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는 정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⁵⁾ 그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소유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1797년에 출판한 『토지 정의』에서였다.⁶⁾

페인은 『토지 정의』를 1775-76년 겨울에 썼지만 출판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국 국교회 주교인 리처드 왓슨(Richard Watson)이 『성경의 변호』(An Apology for the Bible)라는 팸플릿을 통해 『인간의 권리』 제2부를 비판하자 이에 대해 반박할 필요를 느껴 이를 출판했다.⁷⁾ 페인은 서문에서 왓슨 주교가 “신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창조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신은 “오직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했으며, 이들에게 수여물(inheritance)로서 지구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발점을 제시한다(609).

먼저 페인은 현재 문명이 “휘황찬란한 걸모습”과 “극도의 비참함”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고, 다시 말해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가장 풍요로운 인간과 가장 비참한 인간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문명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런 현재 문명과 달리, 자연 상태에서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페인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보기에 “자연 상태에서 문명화된 상태로 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문명화된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명화된 상태는 경작, 기술(art), 과학 등의 도움으로 자연 상태보다 더 적은 토지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추정에 따르면 해당 사회의 주민 1/10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몰아넣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문명화된 삶의 이점들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 문명이 만들어낸 해악을 치유”하는 것이 첫 번째 개혁 과제라고 말하는 것이다(609-610).⁸⁾

3) ‘평등주의자의 음모’의 맥락과 바뵈프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Samuel Berstein, “Babeuf and Babouism,” *Science and Society*, Jan. 1, 1938 (2), pp. 29-57; 알베르 소블, 『프랑스 대혁명사』 (하) (두레, 1994), 156-163쪽.

4) 1774년 북아메리카로 건너가 미국 혁명에 참여했던 페인은 1787년에 영국으로 돌아간다.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을 맞이한 페인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판한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반박으로 『인간의 권리』(1부는 1791년에, 2부는 1792년 출판)를 집필했는데, 『인간의 권리』 2부에 대해 선동죄로 기소당했다. 그러자 페인은 1792년 여름에 프랑스로 도망쳤고, 그해 12월에 쥘레로 열린 재판에서 페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페인은 1802년 토머스 제퍼슨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갈 때까지 프랑스에 머물렀다. 토머스 페인에 관해서는 스펜스와 달리 훌륭한 전기가 많이 나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것이다. John Keane, *Tom Paine: A Political Life* (New York, 1995); Jack Fruchtman, Jr., *Thomas Paine: Apostle of Freedom* (New York and London, 1994); Eric Foner, *Tom Paine and Revolutionary America* (London, Oxford and New York, 1976).

5) Philip S. Foner (ed.), *The Life and Major Writings of Thomas Paine* (New York, 1993), pp. 423-441.

6) 『토지 정의』는 앞의 필립 S. 포너(Philip S. Foner)의 책에 실린 것을 이용했으며, 인용할 때 해당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7) John Keane, *Tom Paine* (New York, 1995), p. 425.

8) 루소도 마찬가지로 문명이 자연 상태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페인은 “자연 상태에서 대지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었으며, 만약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공동 재산”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작과 함께 토지 소유라는 생각이 등장했다고 본다. 이는 “대지 위에서 경작에 의해 개량된 것을 대지 자체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인이 보기에 대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 개인적 소유이며, 따라서 “경작된 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기초 지대(ground-rent)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611).

이런 점에서 페인은 인간이 “대지를 점유할 자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의 일부를 영원히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두 가지 권리, 즉 만인의 공동권(common right)과 개인이 경작할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법(Agrarian Law)은 불의한 것이고, 자신이 팜플릿 제목을 ‘토지 정의’라고 한 것은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⁹⁾ 이러한 항의는 토지 소유권에 따라 자연적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아간다(611-612).

이러한 권리의 옹호는 앞서 언급한 기초 지대를 통해 - 기초 지대는 상속재산에 대한 10퍼센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 국가기금(National Fund)을 조성해서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를 지급하고 50세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매년 10파운드를 지급하는 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페인은 이를 박탈당한 자연적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이진 가난한 사람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612-613).

이런 페인의 제안은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권리, 즉 만인의 공동권과 개인이 경작할 권리를 구별하고 있으며, 경작을 통한 개량으로 토지에 덧붙여진 가치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진 가치를 자연상태의 가치의 열 배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세로 1/10을 제안하고 있다.¹⁰⁾ 이런 이유로 그는

운이 덜 좋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맺은 사회 계약이라는 의무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명 상태의 인간은 자연 상태의 인간과 다른데, 이에 대해 그는 『사회계약론』의 「사회 상태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능력은 단련되어 개발되고, 사고는 확대되며, 감정은 고상해지고, 또 그의 영혼 전체는 교양”된다(『사회계약론』, 평권클래식, 2010년, 52쪽). 페인이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루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ack Fruchtman, Jr.,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omas Paine* (Baltimore, 2009), pp. 129-130.

9) 로마의 토지법은 공유지(公有地, ager publicus)의 분배에 관한 법률이다. 처음에 로마의 모든 토지는 이런 공유지로 간주되었으며, 이것이 로마 시민에게 분배될 때 사유지(ager privatus)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로마 역사에서 공유지가 사회경제적 문제가 된 것은 공유지의 점유(occupatio)였다. 점유를 통해 공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이용할 경우 이는 소유(possessio)로 인정받았다. 이는 소농민의 토지 소유 열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도 했지만, 공화정 말기가 되면 주로 상층의 대토지 소유 과정이 된다. 기원전 133년과 122년에 있었던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 개혁 시도는 이런 경향을 억누르고 중소 농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원전 121년, 118년, 111년에 있었던 토지법은 이미 분배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승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페인은 토지법을 문제삼는 것이다. 로마의 토지법에 대해서는 『경제학 대사전』(누리미디어, 2002년)의 「아게르 퍼블리쿠스」 항목을 보라.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좌절에 대해서는 프리츠 하이켈하임, 『로마사』(현대지성사, 1999년), 313-341쪽을 보라.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후의 토지법을 이탈리아의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연구로는 다음을 보라. Kim, Young-Chae, “Post-Gracchan Agrarian Laws 121, 111 B.C.: The Italian Perspective,” 『서양고대사 연구』, 36, 2016. 12, 155-181쪽. 바뵈프도 「평등주의자 선언」에서 ‘토지의 분할’인 토지법을 비판하면서 “더 숭고하고 더 평등한” “공유재 혹은 소유의 공동체(le bien commun ou la communauté des biens)”를 주장한다. http://www.lelibertaire.xyz/Babeuf_manifeste_des_egaux.pdf.

10) 소유권의 발생에 관한 페인의 논변은 로크에게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량에 의해 토지 가치가 열배가 늘어났든지 상속세를 10퍼센트로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의 삶에 유용한 토지 생산물 중에서 10분의 9가 노동의 결과라고 말해도 그것은 대단히 낮추어 잡은 계산”이라고 한다(『통치론』, 까치, 1996, 46쪽).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에 대해 9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

“자연적 상속권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대지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옹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소유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613).

앞서도 말했듯이 소유권에 대한 페인의 논리는 로크의 논변과 공유 지점이 있다. 그는 『토지 정의』보다 앞서 쓴 글에서 “그가 생계수단을 얻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faculty)이 소유의 본질(nature of property)이다, 그것은 그에게 속한 소유[속성]이다. 그가 그것을 취득했다. 그것은 그러한 능력 없이 소유한 외적 소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보호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보호의 대상”이라 말한다.¹¹⁾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는 “대지의 일부를 영원히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공유와 소유에 대한 페인의 논변은 이중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으로 그는 사적 소유 밑에 깔려 있는 공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토지 공유의 관점을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명의 이점에 근거하여 사적 소유를 옹호한 자유주의적 재산권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¹²⁾

페인이 이런 독특한 관점을 제기한 것은 그가 문명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부른 것에서 나온다. 그는 “문명 상태가 시작된 이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이전 시기에 태어났을 사람보다 나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610). 그렇기 때문에 문명 자체를 보존하고, 사회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도 극심한 빈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방도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자연적 소유권에서 찾기 때문에 국가기금과 배당이라는 발상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페인은 분명 19세기에 등장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복지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논자들에게 따라 이를 보상(compensation)이나 배상(ransom)의 정치라고 부르기도 한다.¹³⁾

그렇지만 페인은 문명의 역전불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당대의 상업과 제조업을 옹호했고 보충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없다.¹⁴⁾ 이는 자신이 제안한 계획이 “다른 국가의 정책을 교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618).

이런 페인의 태도는 『토지 정의』를 집필하게 된 또 다른 맥락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

다는 허버트 사이먼의 주장과 비교하라(Herbert A. Simon, “A Basic Income for All,” *Boston Review*, Oct. 1, 2000).

11) Thomas Paine, *Dissertation on First Principles of Government* (1795), at <http://quod.lib.umich.edu/e/ecco/004809392.0001.000/1:2?rgn=div1;view=fulltext>, p. 21.

12) 흐로티우스, 푸펜도르프, 로크 등의 소유권과 비교하면서 페인의 독특한 관점을 드러낸 분석적인 글로는 다음을 보라. Robert Lamb, “Liberty, Equality, and the Boundaries of Ownership: Thomas Paine’s Theory of Property Rights,” *The Review of Politics*, Vol. 72, No. 3 (2010), pp. 483–511.

13) 각각 다음을 보라. Adrian Little, “The Politics of Compensation: Tom Paine’s Agrarian Justice and Liberal Egalitarianism,” *Contemporary Politics*, Vol. 5, No. 1 (1999), pp. 63–73; John W. Seaman, “Thomas Paine: Ransom, Civil Peace, and the Natural Right to Welfare,” *Political Theory*, Vol. 6, No. 1, pp/ 120–142.

14) 페인은 『토지 정의』 뒷부분에서 국가기금과 관련해서 “개인(personal) 소유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해서도” 계산을 해 보았다고 말하지만 계산 내용은 없다. 다만 “개인 재산은 사회의 효과”라든지 “개인 재산의 축적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생산한 노동에 너무 적게 지불한 결과”라는 의미 있는 언급을 한다. 하지만 그는 이에 관해 더 진전된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619–620). 페인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주요 전기 작가들의 다음 책을 보라. Eric Foner, *Tom Paine and Revolutionary America* (Oxford and New York, 1976), pp. 250–251; John Keane, *Tom Paine: A Political Life*, p. 426.

듯이 페인이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배경은 프랑스 총재 정부 시기(1795-1799년)에 있었던 바뵈프의 ‘평등주의자의 음모’ 사건이었다. 페인은 『토지 정의』를 ‘프랑스 공화국의 입법부와 총재 정부’에 헌정하고 있는데, 헌정사에서 ‘바뵈프의 음모’의 기원을 1795년 헌법의 결함, 즉 참정권의 평등이 결여된 것에서 찾으며, 자신의 제안이 이를 치유하는 방책이라고 말한다. 자연적 소유와 인위적 혹은 취득한 소유를 구분하는 페인은 후자의 경우 평등은 불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또한 페인이 보기에 참정권은 자유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들의 권리는 평등하다고 본다(606-607). 이런 페인으로서의 바뵈프의 음모가 일어난 맥락은 이해하지만 그 방식이나 목표가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온건한 입장을 보인 페인과 달리, 토머스 스펜스는 좀 더 근본적인 제안, 즉 소유 체제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다. 일찍부터 공유에 기초한 사회의 운영에 관한 생각을 피력한 스펜스는 당대의 거물인 페인에 대해 존경심과 경쟁심이라는 양가감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문에 그가 페인보다 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1790년대 그의 저술에서 페인이 하나의 준거점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청년과 노인의 대화로 이루어진 토머스 스펜스(1750-1814년)의 팸플릿 「억압의 종식」은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스펜스가 쓴 또 다른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페인의 글보다 더 나아간 것이지요”(34).¹⁵⁾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정치 저술의 저자인 토머스 페인을 무척이나 의식한 이런 서술은, 부분적으로는 경쟁의식의 발로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오직 국왕들만을 겨냥하고 있는” 페인과 달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가진 급진성에 근거한 것이다(35). 이때 그가 말하는 불평등의 해결책은 토지의 공유인데, 왜냐하면 불평등이란 자연 상태에서 공유재였던 토지를 소수가 찬탈하고 여기에 대해 다수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⁶⁾

토머스 스펜스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였다. 그는 1750년에 잉글랜드의 뉴캐슬에서 열아홉 형제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 1790년대 초 런던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가난한 어망 제조업자였고, 어머니도 스타킹을 파는 일을 했다. 약간의 학교 교육을 받은 스펜스는 열 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주로 성경을 통한 학습을 받는 한편 독학으로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제임스 해링턴의 『오세아나 공화국(The Commonwealth of Oceana)』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한편 그의 가족은 제임스 머리(James Murray) 목사가 이끄는 장로교의 한 분파 교회에 다녔으며, 나중에는 좀 더 공동체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글래스이츠(Glassites) 교파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는 없었으며, 제임스 머리는 이후 스펜스의 주요한 동료가 된다. 성인이 된 스펜스는 영어 개인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후 몇몇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스스로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¹⁷⁾

15) 스펜스의 글은 따로 밝히지 않는 경우 다음 책에서 인용하며 괄호 안에 해당 쪽수를 밝히는 방식으로 한다. H. T. Dickinson (ed.), *The Political Works of Thomas Spence* (Newcastle, 1982).

16) 사적 소유의 발생과 관련한 스펜스의 주장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제2부 첫머리와 유사하다. “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이 내 것이야’라고 말할 생각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하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간이 문명사회의 실제 창시자이다”(『인간 불평등 기원론』, 팽귄클래식 코리아, 93쪽).

17) 토머스 스펜스의 생애는 그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쓴 세 편의 짧은 전기에 기초한 것이다. Thomas Evans, *A Brief Sketch of the Life of Mr. Thomas Spence* (London, 1821); Allen Davenport, *The Life, Writings, and Principles of Thomas Spence* (London, 1836); “A Memoir of Thomas Spence,”

스펜스가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처음 표명한 것은 1775년 11월 8일 뉴캐슬철학회(Newcastle Philosophical Society) 강연이었다. 「토지 소유권 만인의 권리(Property in Land Every One's Right)」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서 그는 처음으로 토지 공유 사상에 대해 말하며, 이후 '계획(Plan)」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런던으로 이주한 스펜스는 시내 중심가인 하이홀본(High Holborn)에서 자신의 팸플릿과 페인의 『인간의 권리』를 포함한 급진 서적을 파는 일을 시작했으며, 급진적인 정치주간지 『피그스 미트(Pig's Meat or Lessons for the People, The Swinish Multitude)』를 발간한다. 또한 런던교신협회(London Corresponding Society) 및 램버스로열협회(Lambeth Loyal Association)와 같은 급진주의 단체의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당대의 다른 급진주의 서적상과 마찬가지로 스펜스도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를 받았다. 여러 차례 구금되었고, 1801년에는 선동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간 수감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새로운 저술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신 '계획'을 퍼뜨리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 1814년 여름 새로운 주간지 『자이언트 킬러(The Giant-Killer, or Anti-Landlord)』를 발간하지만 두 번밖에 발행하지 못했고 9월 8일 사망한다.¹⁸⁾

토머스 스펜스가 현재와 같은 토지 소유권과 그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는 잉글랜드 농촌의 전반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인클로저 운동 혹은 의회 인클로저 운동이라 불리는 사태로 인해 일어난 변화는 토지 경작권과 소유권에 큰 변화를 낳았는데, 소토지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은 비용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농업 경영자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관습적 권리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노동자(cotter)와 공유지 점유자(squatter)는 공유지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생계수단을 박탈당하게 된다.¹⁹⁾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760년대와 1770년대에 뉴캐슬은 두 가지 커다란 쟁점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을 경험한다. 하나는 미들섹스(Middlesex) 선거구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캐슬의 공유지인 타운무어(Town Moor)의 이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미들섹스 선거구 사건은 1764년 1월 하원이 존 윌크스(John Wilkes)를 의회에서 축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존 윌크스는 당대의 선동적인 급진적 언론인이자 의원으로서 자신의 신문 『노스 브리튼』과 개인 저술을 통해 정부와 기성 가치 체계를 공격한 인물이다. 윌크스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이런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사람들은 그를 의회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후 그는 런던 외곽의 미들섹스 선거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당선되고 또 의회에서 축출되는 일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윌크스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이 사건은 잉글랜드 전역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뉴캐슬에서도 『뉴캐슬 크로니클』과 『뉴캐슬 쿠런트』 같은 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윌크스를 지지했다. 또한 로빈 후드 회, 카파도키아회(Cappadocian Society),

in Eneas Mackenzie,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Account of the Town and Country of Newcastle upon Tyne* (Newcastle, 1827), p. 400. 이외에 다음도 중요한 문헌이다. Olive Rudkin, *Thomas Spence and His Connections* (London, 1927). 현대의 연구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것은 다음이다. P. M. Ashraf, *The Life and Times of Thomas Spence* (Newcastle, 1983).

18) 「토지 소유권 만인의 권리」는 1790년대 스펜스가 여러 차례 “인간의 실질적 권리(The Real Rights of Man)”라는 제목을 달아 팸플릿 형태 혹은 『피그스 미트』 기사로 발간했지만, 강연 초고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2005년에 발견된다. 이 초고는 다음 책에 실려 있다. Alastair Bonnett and Keith Armstrong (eds.), *Thomas Spence: The Poor Man's Revolutionary* (London, 2014). 스펜스의 대부분의 저작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thomas-spence-society.co.uk

19)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1775-1815,”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Vol. 18, No. 3 (Aug., 1952), pp. 287-302.

레코더스 클럽(Recorder's Club), 헌정회(Constitution Club) 등 논쟁 클럽과 급진적인 조직이 등장한다. 이 조직들의 주요 인물들이 이후 벌어진 타운무어 사건에서 제임스 머리, 토머스 스펜스 등과 함께 시의회(Common Council)에 맞서 싸우게 된다.

다음으로 타운무어 사건은 시의회가 공유지인 타운무어의 일부를 경작과 개량을 위해 임대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이에 맞서 헌정회 의장인 조지 그리브(George Grieve)는 월크스파 변호사인 서전트 글린(Serjeant Glynn)을 고용해서 법정 소송을 준비했고, 스펜스와 머리는 소토지 보유농과 임차인의 관습적 권리를 옹호하는 선전물을 작성하고 직접 선동하기도 했다. 1773년 8월 노덤버랜드 순회재판소는 자유인(freemen)의 청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뉴캐슬 시가 법원의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입법에 자유민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74년 6월에는 뉴캐슬 타운 무어 법이 만들어져 타운무어의 토지 임대 상한선을 100에 이커로 하고 기간도 7년으로 제한하게 되었다.²⁰⁾

이런 배경 속에서 토머스 스펜스는 1775년 11월에 뉴캐슬철학회에서 토지 공유에 관한 강연을 하게 된다. 스펜스는 “사회 속에서 사는 인류가 토지 소유에 대한 자연적이고 동등한 권리로 부터 모든 이점과 자유 - 그러한 상태에서 인류가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하는 - 를 획득할 수 있는가”(7)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다.²¹⁾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자 자기주장의 전제로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토지 소유와 자유가 동등해야 한다”(7)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반어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 의거해서 살아야 합니까?”(7) 다시 말해 이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살아갈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권리가 현재의 소유 형태에 의해 부정당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스펜스는 기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고자 한다. 스펜스가 보기에 지금의 상태는 “현재의 민족들이 출현할” 때 “소수가 땅과 그 모든 부속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 그러한 찬탈과 불의한 주장이 ...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관습적 사고 혹은 그와 동일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지가 소수를 위해 혹은 소수에 의해 만들어졌고, 대지를 세계에 사는 다른 피조물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부르는 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8).

“최초의 토지 보유자”를 “찬탈자이자 폭군”이라고 부르는 스펜스는 이후 “자신의 땅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상속권, 구매 등등을 통해 최초의 토지 보유자로부터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소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장을 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본다(8).

여기까지 현재의 소유권의 기원과 그 부당함에 대해 설명한 스펜스는 다시금 “인류가 자유, 공기 혹은 태양의 빛과 열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동등하고 정당한 소유권이 있”으며, “인류가 사회의 본질과 일치하는 더 많은 혜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정해진 날에 교구(parish)의 모든 주민이 모여 자치체(corporation)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은 자치체의 구성원이 되고, “모든 교구의 땅과 거기서 부속되는 것이 자치체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 재산에 대해 자치체는 “전부 혹은 일부를 임

20) Rachel Hammersley, “Spence's Property in Land Every One's Right: Problems and Solutions,” in Bonnett and Armstrong (eds.), *Thomas Spence*, pp. 35-41.

21) 이 강연에 대한 인용은 다음 책에 실린 초고에 따른다. Bonnett and Armstrong (eds.), *Thomas Spence*, pp. 7-11.

대, 정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이 재산을 타인이나 다른 자치체에 양도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을 노예로 팔거나 자신의 손으로 학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9).

자치체가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거둬들이는 지대는 정부 분담금부터 목사, 교사, 관리에 대한 봉급 지불, 빈민 구제, 사회 기반시설 건설과 유지, 무장 등 말 그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대 이외에 다른 종류의 세금은 없어지게 되고, 이는 다시 관료제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왜냐하면 “물품세 징수관, 관세 징수관, 징세관, 군대, 연금생활자, 뇌물 수수 등등 나라를 좀먹는 해충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9-10, 11).

국가와 관련해서 스펜스는 이러한 교구 혹은 자치체의 연합, 즉 연방주의 국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교구가 제안하고 여러 교구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출됨으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가는 교구들이 사태에 맞는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며, “인류의 권리와 자유를 명예로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보고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10).²²⁾

토머스 스펜스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부정할 정도로 명칭한 사람은 거의 없다”(7)고 말하지만 그의 강연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강연록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뉴캐슬 거리에서 팔면서 선전했다. 그러자 뉴캐슬철학회는 허가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제명했다.²³⁾

이후 스펜스는 1790년대 초 런던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뉴캐슬에 머물면서 교사 일을 계속했다.²⁴⁾ 이 사이에 영어 알파벳 개혁에 관한 글을 썼고, 토지에 관해 좀 더 진전된 생각을 담은 『로빈슨 크루소의 역사에 대한 보충(A Supplement to the History of Robinson Crusoe, 1782)』을 썼다. 하지만 제임스 머리를 비롯한 몇몇 가까운 동료들이 죽고, 거의 무일푼의 처지가 되자 런던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이제 토머스 스펜스는 신생 미국의 헌법 제정, 프랑스 혁명 속에서 재흥한 급진주의의 중심지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²⁵⁾ 이 속에서 소유를 둘러싼 바비프와 페인의 논쟁에 비스듬하게 끼어들면서 만인에 대한 정기적인 ‘지대 배당’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다.²⁶⁾

페인에 대해 존경심과 함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스펜스는 페인의 『토지 정의』가 나오자 본격적으로 비판적인 대응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목적으로 쓴 것이 『유아의 권리(The

22) 자유 국가가 연방 공화국이라는 헌정 체제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년)에서 시작되며, 존 밀턴이 『자유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쉬운 방법』(The Ready and Easy Way to Establish a Free Commonwealth)(1660년)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켈턴 스키너, 『퀸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푸른역사, 2007년), 85-87쪽.

23) *Newcastle Chronicle*, 25 Nov. 1775, p. 2.

24) 스펜스가 정확하게 언제 런던으로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179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 12월에 스펜스가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를 판매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동료가 된 프랜시스 플레이스(Francis Place)와 윌리엄 혼(William Hone)이 그해부터 알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P. M. Ashraf, *The Life and Times of Thomas Spence*, p. 41.

25) 1790년대 런던을 비롯해서 잉글랜드의 급진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전이 된 E. P. 톰슨의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창작과비평사, 2000년)의 제5장 「자유를 나무를 심기」를 보라. 여기서 톰슨은 스펜스를 존 셸월과 함께 주목할 만한 두 명의 이론가로 취급하고 있으며, 런던교신협회 내의 ‘혁명파’ 내에서 이론적으로 중심인물이었다고 말한다. 222, 227-231쪽.

26) 토머스 스펜스가 ‘지대 배당’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드러낸 것은 1783년에 쓴 발라드에서였다고 한다. P. M. Ashraf, *The Life and Times of Thomas Spence*, pp. 160-161.

Rights of Infants)』(1797년)이다. 이 글에서 그는 페인이 늦었지만 시편과 로크의 주장, 즉 신이 인류의 자손에게 대지를 주셨고, 인류에게 대지를 공유물로 주셨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지만, 페인이 제시한 계획은 “정의롭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방책이라고 포문을 연다. 페인이 제안한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지불금(stipends)”은 “비열하고 모욕적인” 것이다(47). 토지 소유를 찬탈이라고 보는 스펜스에게 페인의 계획은 도둑이 훔친 것의 일부를 희생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 즉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²⁷⁾

여성과 귀족의 대화 형식으로 서술된 『유아의 권리』에서 화자인 여성은 우선 두 가지를 주장한다. 하나는 “어머니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새끼들을 적절하게 양육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이런 “권리의 옹호자”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 여성은 “당신[귀족]과 모든 전제자들을 쓰러뜨릴 때까지 이를 주장할 기백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더 공정한 체제를 위해서 귀족들이 자진해서 토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너희의 머리에서 피가 흐를 것이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48, 49, 52).

그러면서 여성은 매우 단순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제시한다. 여성은 모든 교구에서 여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임차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지대를 받고, 또한 비게 되는 농장과 가옥을 7년 단위로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임대한다. 이 수입금에서 정부에 보내는 돈이 세금 대신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이나 세무공무원이 필요 없게 된다. 여기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보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로를 닦거나 보수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나온다. 공무원 봉급도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남는 돈은 교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한다. 스펜스는 이런 여분의 돈이 지대 수입금의 2/3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잉여 지대의 분배가 문명사회에 사는 모든 인간의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라는 것이다(51).

이미 뉴캐슬 강연에서부터 토지 공유의 회복을 주장한 스펜스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토지 소유와 자유가 동등”한 자연 상태는 에덴동산이나 로크의 자연 상태가 아니며 무릉도원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시민적 휴머니즘 전통 속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체제이며, 이 속에서 모두가 능동적인 시민적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는 이를 두고 “각 교구는 세련된 작은 아테네이다”라고 말한다(13).²⁸⁾

또한 스펜스는 페인과 달리 현재의 토지 소유가 경작자의 노동을 통해 부가된 가치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토지 소유권 만인의 권리』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찬탈로 인해 토지 이용권을 부정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 그리고 땅에 의해 자라는 나무, 허브 등등에 의지해야만 했”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건, 증식하는 것이건, 노동하는 것이건, 싸우는 것이건 모두 자신의 주인을 위한 것”이다(8).

스펜스는, 한 나라의 진정한 성격 및 그 나라가 향유하는 자유를 규정하는 것은 정치 체제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 소유의 분배라고 보았고, 이 점이 스펜스가 페인이나 당대의 다른 공화주의자 및 급진주의자와 갈라지는 지점이다. 그는 『자연 상태로의 사회의 회복』(The Restorer of Society to Its Natural State, 1801)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지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정부 형태가 군주제인가 공화제인가가 무슨 의미인가?”(71)

27) Keane, *Tom Paine*, p. 427.

28) Malcolm Chase, “Paine, Spence and the ‘Real Rights of Man’,” *Bulletin Society for the Study of Labour History*, Vol. 52, No. 3 (1987), pp. 32-40.

이런 생각의 스펜스가 페인의 『토지 정의』를 보고 황당하게 생각한 것은, 페인이 토지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고 있고, 토지 없는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스펜스가 보기에, 페인의 계획은 지주의 이해관계를 중앙집권화된 국가에 통합하여 결국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토지 정의 체제에서는, 말하자면 인민은 자신들의 권리 대신에 보잘 것 없는 보답을 받 아들이는 것을 통해 생득권을 죽 한 그릇에 팔게 될 것이다 ... 인민은 공공기금에서 자신 이 최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²⁹⁾

스펜스는 이렇게 경제적 민주주의와 참여를 연동시키고 있으며, 이 속에서 공적 지출에 대한 감시,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 대중 교육의 강화 등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스펜스의 입장은 제임스 해링턴(1611-1677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부패를 막기 위한 선거 제도와 성인 남성 선거권 도입에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 지 소유를 권력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해링턴은 군대를 유지 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군 대를 집합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 따라 한 사람이 한 나라의 토 지를 소유하는 것은 절대군주제에 잘 들어맞으며, 소수가 나누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혼합 군 주제가 이상적이다. 끝으로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것은 공화정(commonwealth)에 가장 잘 들어 맞는다고 보았다.³⁰⁾ 이렇게 토지 소유와 정치체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토지 분배가 적절하 게 이루어지지 않은 공화정은 불안정하고 단명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링턴은 잉글랜드의 경우 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일 년에 2,000파운드가 넘지 않도록 분할해야 한다고 보았다.³¹⁾

스펜스는 해링턴과의 공명 속에서 페인이 “온갖 학대와 불만의 뿌리”(35)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던 것이고, 이는 토지 공유의 회복과 이에 기초한 지대 배당이라는 구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토머스 페인은 급진적 공화주의자로서 주로 당대의 뛰어난 정치 저술의 저자로 기억되고 있 다. 이런 이유로 주요한 경제 개혁과 사회복지의 방향을 담고 있는 『토지 정의』는 가장 주목받 지 못한 저작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자연적 소유와 인위적 소유의 구별을 통해 한편으로 사 적 소유를 뒷받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모든 사람의 공유권을 인정하는 그의 논구는 복지를 권리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³²⁾ 이런 이유로 현대의 기본소득론자들이

29) 토머스 스펜스가 『유아의 권리』에 붙인 부록. Bonnet and Armstrong (eds.), *Thomas Spence*, p. 177.

30) James Harrington, *The Commonwealth of Oceana* (1656), p. 3. http://www.khamkoo.com/uploads/9/0/0/4/9004485/the_commonwealth_of_oceana.pdf. 해링턴의 영 향을 분석한 글로는 다음을 보라. Chase, “Paine, Spence, and the ‘Real Rights of Man’,” pp. 35-36; Rachel Mammersley, “Spence’s *Property in Land Every One’s Right*: Problems and Solutions,” in Bonnet and Armstrong (eds.), *Thomas Spence*, pp. 35-63.

31) Ibid., p. 60. 포카는 『오세아나 공화국』을 “시민적 휴머니즘과 마키아벨리적 공화주의에서 끌어온 개념들에 의지하여 잉글랜드 정치 이론과 역사를 대폭적으로 개정”한 “패러다임적 신기원”으로 평가하며, 이는 “잉글랜드의 군사 공화국을 무장 평민의 통치로 정당화하려는 충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J. G. A. 포카,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2』 (나남, 2011년), 94-95쪽.

32) 현대 복지국가의 원형을 페인에서 찾는 논의로는 다음을 보라. J. B. Agassi, “The Rise of the Idea of the Welfare Stat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 Vol. 21, No. 4 (1991), 444-457; Bernard Vincent, “Paine’s *Agrarian Justice* and the Birth of the Welfare State,” *The Transatlantic Republican: Thomas Paine and the Age of Revolution* (Amsterdam and New York, 2005), pp. 125-135.

그를 원형적인 기본소득 주창자로 보게 되었다.

이에 반해 토머스 스펜스는, 사적 소유는 강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토지소유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현 체제의 기초라고 보고 이를 다시 공유로 바꾸는 것만이 인민의 지복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이런 스펜스의 계획은 바뵈프식의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분배와는 결을 달리 한다. 우선 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반대하고 자율적인 교구를 기본적인 삶의 단위로 보았다. 다음으로 공유와 임대라는 방식으로 토지를 운영하고 여기서 나오는 지대를 정치공동체 운영 및 배당의 기금으로 보았다. 끝으로 인격적 소유(personal property)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부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결국 그가 꿈꾸었던 것은 물질적 토대가 보장되는 소생산자의 참여 공화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스펜스의 계획은 페인의 구상과 달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토지는 인민의 농장(People’s Farm)이며, 개인이나 계급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국민(nation) 전체에 속한다”³³⁾라는 줄리언 하니(Julien Harney)의 선언을 통해 차티스트 운동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으며, 맬더스와 존 스튜어트 밀의 우려와 반박은 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스펜스의 사상은 이후 영국의 토지 국유화 운동으로까지 이어진다.³⁴⁾

이렇게 두 토머스는 지향이 다르긴 했지만 18세기 후반 상업과 제조업의 발전, 시장경제의 진전, 인클로저 등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사적 소유와 경제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방식과 경로로 토지 공유에 대한 논변을 마련한 의심 많은 쌍둥이었다고 할 수 있다.

33) *Northern Star*, 30 Aug. 1845.

34) 19세기 전반기의 스펜스 사상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alcolm Chase, *‘People’s Farm’: English Radical Agrarianism 1775-1840* (Oxford, 1988). 스펜스와 영국의 토지 국유화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T. M. Parssinen, “Thomas Spence and the Origins of English Land Nation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4, No. 1 (1973), pp. 135-141. 그렇지만 이런 운동이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헨리 조지(1839-1897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기본소득과 연결시킨 대표적인 국내외 문헌은 다음을 보라. 남기업,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녹색평론』, 2016년 5-6월호(148호), 162-174쪽; Jeff Smith, “Fund Basic Income Grants Not from Income but from Outgo,” *Georgist Journal*, Oct. 13, 2012.<http://www.georgistjournal.org/2012/10/13/fund-basic-income-grants-not-from-income-but-from-outgo/>